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 1 조 (목적)

노인학대 및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사회복지 관계 법규와 감독관청의 시설운영에 관한 지침 및 규정에 우선하며,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제 3 조 (학대의 종류 및 정의)

학대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제 4 조 (노인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시설은 직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동료 직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직원은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6.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7. 직원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직원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노인학대 사례 처리 절차)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1. 시설은 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3. 직원은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시설장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촉탁의는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신고를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시설장은 학대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1.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관리

1.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2.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이 보는 앞에서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언어를 하는 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 7 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①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 1)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2)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1)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2)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②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1)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⑤ 신고자의 권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 8 조 (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1.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2.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5.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1.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1.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4.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9 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1. 외부강사 초빙 교육 : 연1회 이상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2. 내부 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 교육 실시